



# 산학협력단

수신 전기관(학과(부))

(경유)

제목 신임교원 특허지원 간접비 사용기준 개선 안내

(TITLE)

1. 관련

가.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-6505(2020.06.25) 「신임교원 특허지원 간접비 사용기준 개선(안)」

나.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-9713(2020.09.09) 「2020년도 제9차 지식재산관리위원회 회의록」

2. 위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본교의 신임교원 특허지원 간접비 사용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알려 드리오니

소속 교원의 직무발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선사항

구분	기존	개선
신임교원 인정기간	·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	·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
신임교원 특허지원 간접비 산출 공식	· 임용 1년차: (당해 연도 1년 간접비의 10%) · 임용 2년차: (직전 1년 간접비의 10%) · 임용 3년차: (직전 2년 간접비 평균의 10%)	· 신임교원의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특허지원 간접비 先사용 (국내출원에 한함) 허용 * 先사용비용은 추후 발생될 개별 특허지원 간접비에 대해 전액 소급하여 차감
신임교원 특별지원금	임용 3년차까지 당해 연도 산출액의 50%를 특별지원금으로 추가 배정 (이월불가)	-

불임 신임교원 특허지원 간접비 사용기준 개선안 1부. 끝.

##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

팀장 이한성

부장 김용근

본부장

2020. 9. 14.

전결

김종백

협조자

시행 지식재산전략본부-9823 (2020.9.15.) 접수 ()

우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 311호

/http://snurnd.snu.ac.kr

전화 02-880-2216

전송 02-880-5554

/hslee@snu.ac.kr

/ 공개